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6년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노후장비 교체 및 행정업무서비스 개선
○ 발주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오픈베이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6년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노후장비 교체 및 행정업무서비스 개선)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다음의 기술지원 대상제품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특수한 능력·품질의 지원범위로 한다.

가. 대상제품 : 가상화 소프트웨어(VMware Cloud Foundation 9, 128코어)
나. 대상기간 : 라이선스 기간 3년 포함
다. 지원범위
- 노후장비 교체 및 행정업무서비스 개선 사업 에 따른 물품공급 및 업그레이드
- 서비스에 대한 시스템 구조 개선 및 기술지원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예상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금 211,200,000원, 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 년 4 월 23 일

발주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오픈베이스)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6년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노후장비 교체 및 행정업무서비스 개선
○ 발주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핸디소프트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6년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노후장비 교체 및 행정업무서비스 개선)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다음의 기술지원 대상제품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특수한 능력·품질의 지원범위로 한다.

가. 대상제품 : 행정업무 소프트웨어(HANDY SW Version 10.3, Intelligence 포함)
나. 대상기간 : 라이선스 기간 3년 포함
다. 지원범위
- 노후장비 교체 및 행정업무서비스 개선 사업 에 따른 물품공급 및 업그레이드
- 서비스에 대한 시스템 구조 개선 및 기술지원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예상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금 591,052,000원, 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04월 23일

발주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핸디소프트) (인)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KERIS 노후장비 교체사업
○ 발주 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제조사· 공급사 : ㈜아인톱시스템
○ 기술지원제품 : 그룹웨어 가상화서비스 이전 기술지원

제1조(목적) 이 협약은 KERIS 노후장비 교체사업 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오백만원(₩5,000,000)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4월 15일

발주기관명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인)

제조사 · 공급사명 ㈜아인톱시스템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6년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노후장비 교체 및 행정업무서비스 개선
○ 발주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크리니티㈜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6년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노후장비 교체 및 행정업무서비스 개선)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서버이전·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서버이전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다음의 기술지원 대상제품의 원활한 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특수한 능력·품질의 지원범위로 한다.

가. 기술지원 대상제품 : 내부 메일시스템
나. 기술지원 대상기간 : 사업 종료시까지
다. 지원범위
- 노후장비 교체 및 행정업무서비스 개선 사업 에 따른 이전 지원
- 서비스에 대한 시스템 구조 개선 지원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예상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금 2,000,000원, 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서버이전·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4월 3일

발주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크리니티㈜)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6년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노후장비 교체 및 행정업무서비스 개선
○ 발주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데이타뱅크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6년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노후장비 교체 및 행정업무서비스 개선)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서버이전·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서버이전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다음의 기술지원 대상제품의 원활한 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특수한 능력·품질의 지원범위로 한다.

가. 기술지원 대상제품 : 행정업무 DB
나. 기술지원 대상기간 : 사업 종료시까지
다. 지원범위
- 노후장비 교체 및 행정업무서비스 개선 사업 에 따른 이전 지원
- 서비스에 대한 시스템 구조 개선 지원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예상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금 3,000,000원, 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서버이전·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 년 4 월 23 일

발주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주)데이타뱅크)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6년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노후장비 교체 및 행정업무서비스 개선
○ 발주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정보라인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6년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노후장비 교체 및 행정업무서비스 개선)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서버이전·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서버이전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다음의 기술지원 대상제품의 원활한 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특수한 능력·품질의 지원범위로 한다.

가. 기술지원 대상제품 : DB암호화솔루션
나. 기술지원 대상기간 : 사업 종료시까지
다. 지원범위
- 노후장비 교체 및 행정업무서비스 개선 사업 에 따른 이전 지원
- 서비스에 대한 시스템 구조 개선 지원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예상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금 1,500,000원, 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서버이전·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4월 23일

발주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정보라인) (인)